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0
------	------

제출일자 : 2024. 4. 15.
제출자 :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대 위원 수를 늘려 위원회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연임 규정을 실정에 맞게 한 차례로 축소하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원 확대 및 구성 정비(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 약자 참여 촉진(안 제9조제3항 신설)
- 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안 제9조제6항)
-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기존 위원 임기의 종기에 맞춤(안 제9조제6항)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관련 개정

- 1)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9조의2)
- 2)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3 신설)
- 3)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 규정 삭제(현행 제13조제3항 단서 삭제)
-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를 “예산담당부서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안 제14조)
- 5)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안 제18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중 “, 「지방재정법」 ”을 “, 「지방재정법」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40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방법으로 모집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를 “위촉하되”로, “동별2명”을 “동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예산, 재정 등에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위”를 “동별 운영위”로, “호선한다”를 “1명씩 호선한다”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각 동별 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 이라도 위촉 해제”를 “임기 중이라도 해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담당부서장”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도 포함하여 적용하되, 이미 한 차례 연임 중인 위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u>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u>사람을 말한다.</u></p> <p style="margin-left: 40px;">1. · 2. (생략)</p> <p>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조(설치) ① (생략)</p> <p>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4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u>각호의</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u>-----</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법령준수의무) -----</p> <p>-----</p> <p>-----, <u>「지방재정법」</u>-----</p> <p>-----</p> <p>-----.</p> <p>제7조(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9조(구성) ① -----</p> <p>----- <u>60명</u> -----.</p> <p>② ----- <u>각 호의</u></p>

방법으로 모집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하되, 제2호에 따른 추천은 각
동별2명으로 한다.

1. 공개모집 : 신청자중 20명 이
내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20명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위촉하되-----

동별 2명-----.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추
천한 사람

3. 그 밖에 예산, 재정 등에 전
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성별 비율을 고려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
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 및 사
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
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
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
고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
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

⑤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운영위원회)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운영위 위원은 각 동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존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삭제>

제9조의2(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각 동별 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동별 운영위 ----- 1명씩 호선한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9조의3(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

제)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되, 선정기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예산, 재정 등에 전문가 또는 경험 있는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제10조(위원의 해촉) <삭 제>

--- 임기 중이라도 해촉 -----

수 있다.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 ② (생략)	제13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u> 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 ----- ----- ---. <단서 삭제>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간사) ① ----- ----- -- <u>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회의공개)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 등을 공개하	제19조(회의공개) -----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u> ----- ----- -----

여야 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치행정과 주민협치팀 박소영
연락처	2627 - 2205

현 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4.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추천은 각 동별2명으로 한다.<개정 2020.3.25.>

1. 공개모집 : 신청자중 20명 이내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20명
-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3.25.>
- ⑤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7.17.>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7.7.17.>

제9조의2(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 위원은 각 동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 심의로 부치는 사항
- ⑤ 운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7.17.]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되, 선정기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개정 2017.7.17.>

1. 예산, 재정 등에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7.>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7.7.17.]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3.25.>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활동<개정 2020.3.25.>
-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3.25.>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며 정기회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심사 시 위원회의 위원이 사업 제안자(공동 제안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②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7.]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①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칙

제18조(회의공개)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1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 2017.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장 예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장 예산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